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507
------	------

2018. 6. 25.  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## 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6월 1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6월 1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18. 6. 25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 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김용복)

- 시책 추진 책임성 강화 및 역량집중을 위해 관련 사무를 해당 실국의 소관사무로 명시하고자 함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 따른 남북협력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해 해당 사무를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현황

-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4·27 남·북정상회담과 북·미정상회담 등에 따라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지방 정부 중심의 남북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.
- 시는 그 동안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해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으며, 특히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설치한 2004년 이후에는 매년 인도적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남북교류사업을 추진·지원하였음.
- 하지만,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·24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학술교류 사업을 포함한 제한된 사업이외에 남북교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음.

### 〈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〉

연도	예산집행액 (백만원)	주요사업
2015	324	-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- 6·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지원 등
2016	644	- 서울-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 - 10·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 지원
2017	1,907	-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- 2017 통일테마전 지원
2018 (5.23기준)	1,011	- 평창 동계올림픽·패럴림픽 성공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- 시민참여형 평화·통일 교육 공모사업

- 2018년에는 새 정부 출범이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.

### 〈2018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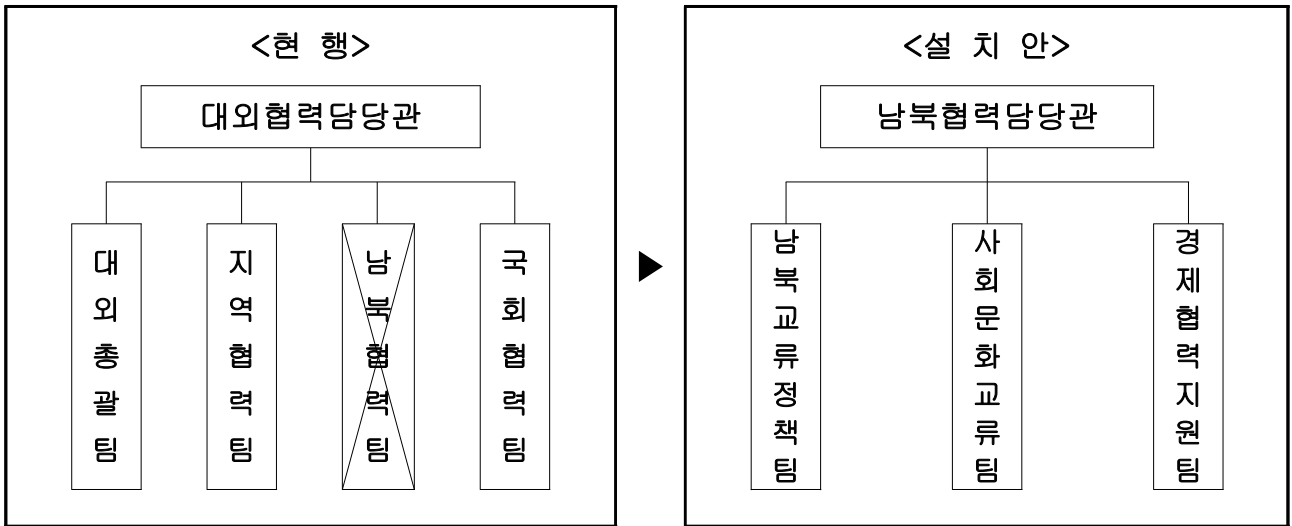
분 야	세 부 전 략	예산액 (백만원)	주 요 사 업
통일기반 조성	평화·통일 공감대 확산	5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시민참여형 평화·통일 교육 공모사업 : 3.5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민교육 사업 : 1.5억원</li> <li>- 시민공감대 확산 사업 : 2억원</li> </ul> </li> <li>▫ 자치구 평화·통일 교육 지원사업 : 2억원</li> </ul>
	남북교류 관련 자원 발굴·관리	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남북교류 기념표식 설치사업 : 1억원</li> <li>▫ 서울시 남북교류 백서 발간사업 : 0.5억원</li> <li>▫ 평화·통일 체험관 운영 : 1.5억원</li> </ul>
	공무원 평화·통일 공감 강화	5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: 0.5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장교육, 전문기관 위탁교육, 국내·국외 통일교육 등</li> </ul> </li> </ul>
유관기관 협력	대외 네트워크 구축 강화	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민관 학술 및 소통 채널 운영 : 3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·15선언 및 10·4선언 기념 학술회의 공동주최</li> <li>- 정부·지자체·민간단체·국제기구 참여 포럼·세미나 개최</li> </ul> </li> </ul>

		1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: 1억원</li> <li>-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, 정기 워크숍 등</li> </ul>
남북 도시교류	서울-평양 도시교류 기반 마련	3,7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서울-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 추진 : 37억원</li> <li>- 도시인프라 협력 및 경제협력 : 36.5억원</li> <li>-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: 0.5억원</li> </ul>
		2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▫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사업 공동 추진 : 20억원</li> <li>- 인도적지원, 개발협력, 사회문화교류 등</li> </ul>

#### 다.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무 소관 지정 (안 제5조)

- 시는 남북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,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특성화된 각종 협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.
- 실제 시는 지난 5월 서울-평양간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도를 목표로 설정한 ‘서울시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’을 수립하고 3단계에 걸쳐 16개 각종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.
- 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안 제5조제6호를 신설하고 기획조정실 분장사무에 ‘남북교류협력 총괄·기획 및 조정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.
- 조례안 개정이후 시는 현재 대외협력담당관내 ‘남북협력팀’을 확대 개편해 ‘남북협력정책팀’을 포함한 3개팀 12명 규모의 ‘남북협력 담당관’을 신설할 계획임.

## 〈남북협력담당관(4급) 신설 계획(안)〉



- 또한,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현재 약 166억원 규모로 조성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장기적으로는 1,000억원 까지 확대·조성할 예정임.
- 최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후 북미간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대내외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해 가고 있음.
-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교류 모델로서 서울-평양간 포괄적인 도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 방향은 적절하고, 항구적인 평화와 교류 활성화를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평가됨.
- 다만, 현재 남북교류협력 혹은 서울-평양간 도시협력과 관련한

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불확실하고, 남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동성이 강한 특정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관을 신설하는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나 조직관리 효율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.

-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가 남북교류 사업을 위해 3개팀 17명 규모의 '통일기반조성담당관'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강원도와 인천시는 현재 각각 2개팀과 1개팀 규모로 운영중인 전담조직을 지방선거 이후 '남북(교류)협력담당관'으로 확대·신설할 계획임.
- 하지만,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북한지역과 지리적으로 직접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상황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.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"과(課)" 단위의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의 인력과 시·도의 경우 '5급 4명 이상'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■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

-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[시·도는 5급 4명 이상,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는 6급 4명 이상 포함]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.

-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, 기존의 대외협력담당관 4개 팀이 3개 팀으로 축소되고, 이 중 남북협력팀이 확대되어 남북협력담당관으로 신설될 경우 대외협력담당관과 남북협력담당관 모두 3개 팀으로만 운영되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임.
- 기구의 신설은 해당 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은 물론이고, 조직이나 기구의 설치 요건을 정한 관계 법령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6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  
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남북교류협력 총괄·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획조정실) 기획조정실장은</p> <p>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5. (생 략)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 <p><u>6.~11.</u> (생 략)</p>	<p>제5조(기획조정실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남북교류협력 총괄·기획 및 조</u></p> <p><u>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7.~12.</u> (현행 제6호부터 제11</p> <p>호까지와 같음)</p>